

안세회계법인・829-7575 세_紀オーオー 경_經 *AnSwer*

••• 2020/2/3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:計·經營 戰略

2020년 2월 14일까지 외부회계감사계약 체결시 주의점

1. 감사대상

외감대상은 직전년말 기준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 100인 이상 중 2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대상이므로, 자산규모 120억 미만이어도 직원과 매출이 많은 인력지원 회사는 외감대상이 될 수 있음. 그러나 임대업 회사와 잉여금 누적 우량회사는 외감대상에서 빠짐.

- 2. 결산기말 45일 이내(12월 말 법인은 2월 14일까지) 선임계약 해야 함(초도감사는 4개월 내).
- 3.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자격요건 갖춘 위원으로 구성함(내부감사 1명, 사외이사 2명,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, 제3 대 주주 2명, 회사다액채권금융사 임원 1인 = 7인).
- 4.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음(사외이사가 맡음).
- 5. 회사 자산이 1천억원이 넘는 비상장 대법인은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 등 상장회사에 준하는 계약절차를 준수함(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).
- 6.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의결요건 충족 등(7명의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)
- 7 감사인 선임계약(최종 2월 14일)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계약체결 전자보고 하고, 한공회에도 계약 신고한

고객 담당자 :